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40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채취영장의 청구 및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직접 청구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 · 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헌법과 법률에 따른 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별 법률의 수사주체와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와 채취영장의 집행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감식

시료채취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수용기관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밖에서의 영장 집행과 집행 촉탁 역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의 관할법원을 실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등 수사 관련 권한의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과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로, “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을 “가 발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영장”을 “사법경찰관은 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를 신청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신청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하고,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7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제8조제7항 단서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를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로, “행할”을 “집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직접 집행”으로, “검사에게 집행지휘를”을 “사법경찰관에게 그 집행을”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
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
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
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
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
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
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
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
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
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
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
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
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
장)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
---가 발부한 -----

-----.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
----- 사법경찰
관은 영장 -----
-----.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
법원 판사에게 디엔에이감식시
료채취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 및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를 신청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신청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하고,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
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⑧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
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
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
나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⑨ · ⑩ (생 략)

제8조의2(불복절차) ① 제8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디
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
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
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
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
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
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
다.

② · ③ (생 략)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① 디엔에이신원확
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

---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 집행할 -
---.

⑧ 사법경찰관은 -----
----- 디엔에이감식시료채
취영장을 직접 집행-----
----- 사법경찰관
에게 그 집행을 -----.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불복절차) ① 제8조제1
항-----

----- 관할법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① -----

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 (생략) 2.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u> <u>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u> <u>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u> 3. · 4. (생략) ② · ③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u>사법경찰관</u>----- ----- -----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